

##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(2.19.(월)시행)로 초격차 확보 지원!

- 이차전지 분야 심사처리기간 22.9개월 → 2개월로 단축 전망 -
-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분야 경쟁 우위 확보 기대 -

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2. 19(월)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.

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. 현재 반도체, 디스플레이 분야\*에 이어서 2. 19.(월)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.

\* 반도체 분야(' 22. 11. 1.), 디스플레이 분야(' 23. 11. 1.) 우선심사 시행 중

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.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.9% 급증\*했는데,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\*\*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.

\*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수: (' 18) 8,940건 → (' 23) 15,720건 [연평균 증가율 11.9%]

\*\* 전체 출원건수: (' 18) 216,224건 → (' 23) 246,056건 [연평균 증가율 2.6%]

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.9개월('23년)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·부품·장비,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\*된 출원이면서, ①이차전지 관련 제품,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, 또는 ②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, 또는 ③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(대학원)의 출원이다.

\*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(예)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]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.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(kipo.go.kr) 소식알림-알림사항-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.

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”이라면서 “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※ 붙임: 이차전지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(안)

담당 부서	특허심사기획국	책임자	과 장	신동환 (042-481-8321)
	특허제도과	담당자	사무관	강혜리 (042-481-8243)



특허청 공고 제2024-45호

「특허법」 제61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, 「실용신안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「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이차전지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9일

특허청장

**이차전지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**

<p><b>우선심사 대상</b></p>	<p>이차전지 소재·부품·장비,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*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                *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(예)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</p>	
<p><b>신청가능한 기간</b></p>	<p>'24. 2. 19. ~ '25. 2. 18.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                 ※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</p>	
<p><b>우선심사 신청료</b></p>	<p>특허출원 20만원 /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                ※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8호 및 제3조제7호</p>	
<p><b>제출할 서류 (입증할 내용)</b></p>	<p>○ <b>국내생산(준비)기업 여부 입증서류</b>                  예) 공장등록증명서, 물품공급계약서, 납품 확인서, 품질협약서,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</p>	<p>○ <b>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</b>                  예) 협약서,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</p>